

의안
번호

3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09. 02.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319호

다. 제출일자 : 2024. 08. 13.

라. 회부일자 : 2024. 08. 28.

2. 제안이유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상 조문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자구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규정상 필수 심의대상을 조례에 명시하여 원활한 운영 도모
 나.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본원칙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여 법규 상호간 체계 확립
 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기 간 : 2024. 07. 04. ~ 2024. 07. 24.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미반영

구분	권고내용	반영 여부	개선안
성별 영향 평가	제3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정·행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미반영	[미반영 사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상위법상 규정을 불필요하게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준수)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상 조문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1)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2)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고, 현행 제5호는 통합관리기금 관련 사항은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삭제한 것이며,

〈안 제2조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삭제된 조문)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1)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 제3조제3항은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대상을 재정·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성북구의회 의원으로 범위를 명시함.

〈안 제3조제3항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정·행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 안 제3조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는 위원의 임기 장기화는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있으나, 위원 고착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제약 및 우수 인력의 참여기회 축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사료 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³⁾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됨.

〈안 제3조제4항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④ <u>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④ 위촉위원----- ----- 하며, 두 차례만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그 밖에 안 제5조, 제10조는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구를 정비한 것이며, 안 제7조, 제11조, 제12조는 장기 미구성 중인 실무대책반 관련 등 유명무실한 조문 및 중복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합리적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